



##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시행 2019. 12. 30.] [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167호, 2019. 12. 30., 일부개정]

한국정책방송원(기획편성부), 044-204-81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제작진행비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2. "표준제작비"라 함은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3. "방송제작 진행비(이하 "진행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 진행 중에 제작 현장 등에서 지급되는 제작비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5. 9. 30.]
4. "온라인콘텐츠"라 함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신설 2018. 4. 2.]

**제3조(등급적용 등)** ① 제작비 지급 대상자의 등급적용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표준제작비는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프로그램 제작담당 부장이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 03. 19.][개정 2013. 11. 5.][개정 2018. 4. 2.]

③ <삭제>[2011. 08. 01.]

④ MC 출연료 등급적용에 있어, 진행자라 함은 대학·연구소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자,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의 전문경력과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

⑤ MC 출연료 등급적용시 인정되는 경력은 지상파의 경우 본인 경력의 100%를 인정하며, KTV채널과 유사한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80%, 그 외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60%를 인정한다, 단 기상캐스터 및 리포터의 경력은 본인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개정 2011. 08. 01.][2011. 10. 07.][개정 2015. 9. 30.]

⑥ PD, 구성작가, 성우 등 제작인력의 경력산정은 방송, 광고, SNS 영상물 등 연관분야의 경력을 포함한다. [신설 2018. 4. 2.]

⑦ 온라인콘텐츠 제작비 등급은 제작주기와 제작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집구성, 종합구성, 일반구성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집구성 : 캠페인 및 계기별 특집 등 고난이도 영상물
2. 종합구성 : 주간 2회 이하의 기획구성물
3. 일반구성 : 주간 3회 이상의 단순제작물 [신설 2018. 4. 2.]

⑧ 표준제작비 심의 시 프로그램별 제작인원 및 적정등급을 확정하고 경력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의 완료 후 불가피하게 제작인원 및 등급 관련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4. 2.]

**제4조(단위시간 적용기준)** ① 제작비 지급단위 시간기준은 편성시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2개 이상의 방송소재로 연결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 각 소재별로 구성작가가 다른 경우, 각 코너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한다. 다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담당 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19.][개정 2013. 11. 5.][개정 2015. 9. 30.]

**제5조(MC출연료 등 지급)** ① MC출연료 산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 03. 05.][개정 2013. 11. 5.][개정 2015. 9. 30.]

② MC출연료는 주간물과 일일물 제작으로 구분하여 출연료 단가를 산·적용하며 주간물과 일일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30.]

1. 주간물은 주2회 이하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2. 일일물은 주3회 이상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며 일일 생방송 및 뉴스를 포함한다.

③ MC출연료의 경우, 단위시간을 10분당 기준으로 30분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은 규정에 따라 추가 10분마다 30~50% 범위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작비 지급)** ① 제작비 지급은 별표 1의 방송제작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제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현지에서 직접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출연료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출연한 경우에는 일반출연료의 50% 범위 내에서 자료조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 직원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9. 28.][개정 2018. 4. 2.]

⑤ 월6회 이상 방송에 출연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MC출연료를 지급받는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명, 출연기간, 출연료, 출연시 준수사항을 서류에 명시하여 서명토록 한다. [개정 2012. 09. 28.][개정 2015. 9. 30.]

⑥ 신설되는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사전기획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획기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한국정책방송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대상기간 : 방송 개시 전 3개월 이내
2. 지급범위 : 연출료 및 구성작가료 등
3. 지급기준 : 별표 1의 기준금액 70% 이내 [신설 2018. 4. 2.]

**제7조(지급액의 조정)** ① 제작비 지급기준은 제작비 지급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며 담당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3. 19][개정 2013. 11. 5.]

② 23:00부터 익일 09:00 이전에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와 운반차량이 필요한 기구나 자료를 가지고 출연하는 자에게는 당해 출연료의 20%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사례지급이 필요한 특수한 자료를 가지고 출연하는 자에게는 당해 출연료의 5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외에서 프로그램 (단일 프로에서 스튜디오와 야외에서 각각 출연하는 프로그램 포함)을 제작하는 경우, 출연료는 편당 기본출연료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 프로그램에 동일인이 집필과 출연을 겸하였을 경우의 제작비 지급은 집필과 출연 중 유리한 것 하나는 당해 제작비 지급기준액의 전액을, 다른 하나는 지급 기준액의 8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일일 생방송 및 뉴스 프로그램의 MC가 연속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추가되는 방송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50%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 4항에서 이동 <2015. 9. 30.>] [개정 2015. 9. 30.]

⑥ 방송프로그램에 따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인사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5항에서 이동 <2015. 9. 30.>][개정 2015. 9. 30.][개정 2018. 4. 2.]

**제8조(규정의외의 제작비)**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제작비 지급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

② 시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 지급 기준액 이외에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획 변경시 제작비)** ① 방송계획에 의하여 집필한 원고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방송용으로 채택한 후, 방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2. 방송용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고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0. 17.]

② 제1항을 제외하고 방송계획에 의하여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원측의 사정으로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1. 5.][개정 2015. 9. 30.]

1. 방송용으로 제작이 완료된 경우 :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
2. 출연자가 방송출연을 위하여 소정의 연습을 완료하였거나 출연 대기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 :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
3. 방송용으로 제작 진행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 :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방송제작 변경내용을 표기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7. 03. 06.>

**제11조(기념품 지급)** 출연료 지급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회 저명인·가두 인터뷰에 응한 불특정인 및 직업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 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 범위 안에서 출연료 대신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제12조(진행비)** ① 방송제작에 필요한 진행비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의 방송제작진행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행비로 방송제작이 불가능하거나 특수진행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모든 진행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에 각 부서의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다. [개정 2018. 4. 2.]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MC출연료 산정과 MC출연료 최고 한도액 조정 심의를 위하여 출연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획편성부장, 정책콘텐츠부장, 방송보도부장, 방송제작부장, 담당팀장, 담당PD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담당부장으로 한다. 다만 정기개편 등 2개 부서 이상이 동시에 관련된 경우는 주무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5. 9. 30.]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5. 9. 30.]

**부칙** <제167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재작가 지급단가의 적용례) 취재작가의 변경된 지급기준 단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